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회 위반  | 2회 위반 | 3회 이상 위반 |
| 가. 법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| 법 제41조 제2항제1호 | 80     | 120   | 180      |
| 나.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1조        | 60     | 100   | 160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항제2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다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를 출입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1조 제2항제3호 |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라.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| 법 제41조 제1항제1호 |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| 240 |
| 마.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마리나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1조 제2항제4호 | 1)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: 10만원<br>2)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: 위반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. 이 경우 부과금액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|     |     |
| 바. 법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·양수, 합병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1조 제2항제5호 |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사. 법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·재개업·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1조 제2항제6호 |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아. 법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| 법 제41조 제2항제7호 |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60 |
| 자. 법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      | 법 제41조 제2항제8호 |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60 |
| 차. 법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1조 제2항제9호 | 1)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: 10만원<br>2)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하는 경우: 위반일수에 1만<br>원을 곱한 금액. 이 경우<br>부과금액은 60만원을 초과<br>할 수 없다. |     |     |
| 카. 법 제28조의11제1항을 위<br>반하여 출항·입항에 관한 사<br>항을 기록·관리하지 않은 경<br>우 | 법 제41조<br>제1항제2호  |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| 240 |
| 타. 법 제28조의11제2항을 위<br>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<br>도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| 법 제41조<br>제2항제10호 |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60 |
| 파. 법 제28조의11제4항을 위<br>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<br>경우                   | 법 제41조<br>제2항제11호 |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60 |
| 하. 법 제28조의11제5항을 위<br>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<br>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| 법 제41조<br>제2항제12호 |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60 |